

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세계보건기구(WTO)가 권고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은 9m^2 이나 서울시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.38m^2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산림청의 전국 생활권 도시림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,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되므로 도심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

○ 이에 서울시가 외곽에 위치하는 중대규모의 산림 및 자연녹지들과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생활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천만

서울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